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4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권칠승·조인철·소병훈

김태선 • 안도걸 • 김준형

송옥주 • 문금주 • 이기헌

이병진 · 홍기원 · 김준혁

강득구 · 김교흥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수(이하 "인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 포
-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 ② (생 략)	관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	③		
자치시가 아닌 <u>인구</u> 50만 이상	<u>다음 각 호의 어</u>		
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합산한 수(이하 "인구"라 한다)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	<u>가</u>		
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u><신 설></u>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사람</u>		
<u><신 설></u>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		
	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u>는 외국국적동포</u>		
<u><신 설></u>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		
	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		
	<u>국인</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